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산부인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산부인과 위탁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나. 산부인과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고성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가.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 나.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3. 위탁내용

- 가.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명: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 대 상 기 관: 강병원(고성읍 중앙로 49, 대표자 강진구)
 - 위 탁 기 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소요예산액: 연간 220백만 원(도비110, 군비110)

- 위탁 운영 소요경비 산출내역

구 분	산출기준	금 액(백만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계		462	220	242	
인건비	○ 인건비 - 전문의 28,140,490 × 12 = 337,685,880 - 간호사 2,750,600 × 12 = 33,007,200 - 간호조무사 2,130,370 × 12 = 25,564,440	396	220	176	※ 자부담은 산부인과 진료 수입으로 충당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비	○ 퇴직적립금 - 전문의 2,345,040 × 12 = 28,140,480 - 간호사 229,220 × 12 = 2,770,640 - 간호조무사 177,530 × 12 = 2,130,360 ○ 4대보험(사업자 부담금) - 2,358,230 × 12 = 28,298,760 ○ 무료 검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 총액 4,800,000원(400,000 × 12)	66		66	

나. 위탁사무 내용

- 전문인력 자체 채용(산부인과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
- (무료검사)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산전검사, 선천성기형아1, 2차검사
- 산부인과 외래진료

다.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
 - 2023. 9. 2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

라.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

- 관내 의료기관을 통한 산부인과 위탁 운영으로 의료취약지 여성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산부인과 위탁 운영 필요성에 86.3%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함.
- 다년간의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진료환경개선에 노력함.
- 산부인과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추진현황 및 계획

- 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23. 9. 22.
- 나.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23. 9. 27.
- 다.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방침 결재: 2023. 10. 5.
- 라. 위·수탁 협약 체결, 공증: 2023. 11. 중

5. 기대효과

- 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나.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

6.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붙임 1
- 나.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결과 보고: 붙임 2
- 다. 관계법령: 붙임 3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 위·수탁기간 종료('23. 12. 31)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16703(2023. 8. 25.)호 관련

II 위·수탁 개요

소재지	경남 고성군·읍 중앙로 49	대표자	강진구
위탁운영	고성 강병원	산부인과 직원수	3명 (의사1, 간호사1, 간호조무사1)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총사업비	1,386백만원(도330, 군330, 자726) ※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규모	99병상(병상가동률 85%)/지하1층, 지상5층: 3,394㎡(연면적) 직원 110명(의사 10, 간호사 24, 기타 76)		
진료과목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 위탁사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 산부인과 외래 진료
 - 고성군민 중 가임기 여성(만18세 ~ 만45세)에 대한 풍진검사 무료
 - 임신부 선천성기형아(1,2차)검사, 산전초기검사 무료(1회에 한함)
 - 전혈구검사(ABO포함), 에이즈, 매독, A형·B형·C형간염, 간기능,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신장기능, 소변, 갑상선검사
 - 산부인과 전문 인력 자체 채용(전문의 1, 간호사 1, 간호조무사 1)
 - 위탁 재산(장비) 관리
- 위탁금액: 660백만원(매년 220백만원)

Ⅲ 사전 이행사항

- 산부인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근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성과평가)
 - 심의일자: 2023. 9. 22.(금) 14:00
 - 심의방법: 대면심의
 - 심의내용: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성과 평가, 재계약 적격 여부
 -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기간: 만료 전 위탁기간(2021. 1. 1. ~2023. 12. 31.) ※2023. 6월말 기준 평가
 - 평가내용: 배점(100점)
 - 공통사무(50점):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적정
지역연계 사업 참여도,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 사업성과(40점): 3년간 진료실적 달성률(20점), 지역사회공헌
 - 사용자 만족도(10점): 설문조사, 만족도 제고 노력
 - 관리위탁 조건 위반 여부(감점 최대10점)

○ **평가결과: 85.5점(재계약 적격)**

- 성과평가 결과 군 홈페이지 공고: **2023. 9. 27.**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종합의견: 적정

-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이 적정한 사무로 판단됨.

IV 재계약(갱신) 사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85.5점, 적격**

- 평가기간: 2021. 1. 1. ~ 2023. 현재/ 평가방법: 서류 및 현장 발표 심사

- 보건행정과-16703(2023. 8. 25.)호: 평균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방침 결재

- 지난 5년간의 산부인과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설문조사를 통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진료환경 개선 노력

- 시설 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진료실 벽지 및 블라인드 교체

- 원스톱 진료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2021. 5. 신형 CT 교체(430,000천원)로 복부 및 자궁 검사 관련 정밀 검사가능

- 2023. 5. 여성 유방암 검진 장비인 유방촬영기 신형으로 교체(25,000천원)

V 행정사항

- 군의회 동의안 제출: 제286회 임시회(2023. 10. 17.)

- 위·수탁 협약 체결: 2023. 11. 중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심의결과 보고

고성군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임.

I 개 요

- 내 용: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업 성과평가 심의
- 일 시: 2023. 9. 22.(금) 14:00
- 장 소: 고성군청 중회의실
- 심의위원: 8명
- 심의대상: 강병원(고성읍 중앙로 49, 대표자 강진구)
- 심의방법: 대면심사(서류 및 현장발표 심사)
- 심의내용: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여부

II 심 의 결 과

-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여부: 적격(평가점수 85.5점)
- 심의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 보건행정과-16703(2023. 8. 25.)호 관련.

III 향 후 계 획

- 고성군의회 동의 및 보고: 2023. 10.
- 위·수탁 협약 체결: 2023. 11. 중

붙임 3

관계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